

「과학기술·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 규정」 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정부조직법」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·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주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·추진하고,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·조정하여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·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동향 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 등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2.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범부처 협력과제에 관한 사항
3.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중 해당 정책과 소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(이하 “관계부처”라 한다)간의 협력, 역할분담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
4.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 분석과 관계 부

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홍보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에
관한 안전 및 보고사항

제3조(회의의 개최시기) 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의장) ① 회의의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된다.

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전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, 이를 주재한다.

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 중 긴급한 안전으로서 관계부처 간의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전에 대해서는 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전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.

⑤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구성원 등)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기획재정부 장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·교육부 장관·외교부 장관·국방부 장관·행정안전부 장관·문화체육관광부 장관·산업통상부 장관·보건복지부 장관·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·고용노동부 장관·성평등가족부 장관·중소벤처기업부 장관·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·국무조정실장 및

과학기술혁신본부장

2.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

3. 「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

②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부처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,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의견청취)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7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

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의안제출)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간사 등) 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. 이 경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된다.

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.

제10조(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) ①의장은 관계부처간에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차관급 중 1명이 되고,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.

제11조(자료의 제출) 회의는 관계부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
2.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
3. 안건을 발굴·기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

제12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회의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

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·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이행상황의 확인) ①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에서 협의·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.

②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협의·조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,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·인공지능정책 협력담당관실	
연 락 처	(044) 202 - 6482